

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

2026년 8월 28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82 호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5조(특별휴가) 제1항 중 “별표2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35조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 인	5
	자 녀	1
입 양	본 인	20
출 산	배우자	2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, 조부모, 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 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※ 비 고 : 입양은 『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』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제35조(특별휴가)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남성근로자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3 9 0 - 7 6 4 1)
		김 재 덕 (3 9 0 - 7 6 0 9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특별휴가) ① ~ ⑥ (생 략)	제35조(특별휴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(신 설) 남성근로자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표2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35조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 인	5
	자 녀	1
입 양	본 인	20
출 산	배우자(처)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, 조부모, 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 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※ 비 고 : 입양은 『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』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개 정 안

[별표2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35조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 인	5
	자 녀	1
입 양	본 인	20
출 산	배우자	2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, 조부모, 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 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※ 비 고 : 입양은 『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』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[참고사항]

□ 「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일부발췌

제23조(특별휴가)

-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■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3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출 산	배우자	2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가족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일부발췌

제7조의7(특별휴가)

- 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